# 제266회(정례회) 제 3 차본회의 <br> 2007년 12월 21일 (금) 

심 사 보 고 서
$\square$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충 청 북도 의 회
행정자치위원회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레안 심 사 보 고 서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1월 12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11월 14일

다. 상 정 및 의 결일자 :
O 제26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12.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•토론, 심사의 결(원 안가결)

## 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이석표)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('07.5.)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 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

나.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．주요내용

가．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（이하＂협의회＂라 함）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（안 제1조）

나．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25 인 이내로 하며，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，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 （안 제2조）

다．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，시•군 교육훈 련업무 담당 과•팀장，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（안 제2조）
라．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（안 제3조）
마．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（안 제8조）

## III．검토보고 요지

（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）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，과 동법 시행령 개정1）에 따라＇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＇설치조항이 신설 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，
$\bigcirc$ 전국적으로 현재 5 개 광역시2）는 조례가 제정되었고，기타
1）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제19조（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）신설 ： 2007. 1． 3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35조（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）
신설 ：2007．4． 12
2）2007년 12월 현재 부산，인천，대구，광주，울산광역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시 행하고 있음．

광역자치단체도 입법예고, 의회심사 등 조례제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$\bigcirc$ 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 자치 발전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,

○ 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공통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 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.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

| 의안 <br> 번호 | $\mathbf{1 7 0}$ |
| :--- | :--- |

제출연월일 : 2007년 11 월 12 일
제 출 자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역량강화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니용

○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함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○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25 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함(안 제2조)

-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•군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-팀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함(안 제2조)
○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토록 함(안 제3조)
○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헙의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(1)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2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.
(2)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.
(3)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, 시 - 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담당 과 - 팀장으로 한다.
(4)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2. 시 - 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 • 협조 사항
3. 기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임기) (1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(2)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(1)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(2)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운영) (1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(2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간사) (1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, 간 사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사무관이 된다.
(2)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
제 8 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 $\square$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

제19조 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 (1)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 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 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관계 공무원(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과 교육 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2)시•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•도 관할 구역 안의 시•군 및 자치구의 시장•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•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훈련에 관한 전 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시•도의 조례 로 정한다.

## $\square$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제35조 (지방공무원능력 발전헙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(1)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한 25 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(2)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 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협 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본 부장이 된다.
(3)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 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•도(시•도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•국장급 공무원이 되며, 위 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 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.
(4)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(5)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
2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•헙조 사항
3. 국가의 정책추진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
4.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헙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(5)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